[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I.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기준

- ‘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및 ‘I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5.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체형 제품. 단,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에 한함

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1. 제품 내 표1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표1> 제품 내 함유 물질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물질	기준	
에틸렌글리콜	10 % (W/W) 이상	
메틸알콜	3 % (W/W) 이상	
디클로로메탄	1 % (W/W) 이상	
1,2-디클로로에탄	10 % (W/W) 이상	
살리실산메틸	5 % (W/W) 이상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1)	제품내 NaOH로서, 2 % (W/W) 이상	
메타크릴산	5 %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흡수제로 쓰인 경우
개미산(포름산)	5 % (W/W) 이상	
하이포(차아)염소산염	2 % (W/W) 이상	
과산화수소	5 % (W/W)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 농도	
모르폴린	5 % (W/W) 이상	
아세토니트릴(2)	500 mg 초과	

주(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2)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2.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
   1)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3)
      주(3) 1-propanol,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2)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3)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5)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Ⅲ.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방향제, 초 등)